

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곤충표본실 규정

제정 1991. 7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곤충표본실(이하 “곤충표본실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) 곤충표본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곤충학 관련교육에 필요한 곤충표본의 이용과 지원
2. 우리나라산 곤충표본과 절지동물 표본 및 외국산 곤충표본의 수집, 보존
3. 관련 국제기관(대학 또는 연구소)을 통한 곤충표본의 수집과 상호 교환
4. 교수 및 대학원 학생의 연구에 필요한 곤충표본(절지동물포함)의 이용지원

제3조(실장) 실장은 농생명공학부 곤충학전공 전임교수 중에서 학장이 임명한다.

제4조(운영위원회) ① 곤충표본실에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곤충표본실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은 회무를 장리하며,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④ 위원은 교무부학장, 행정실장 및 본 대학 교원 중에서 곤충 표본실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한다.
-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1. 기본 운영계획의 수립
 2. 규정의 제정 및 개폐
 3. 기타 곤충표본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

부칙(제115호, 1991.7.1.)

이 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